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7. 19.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 발의자: 박종길 의원 등 9명(김장관, 이선주, 이영빈, 서보영, 임미연, 김기열, 고명옥, 박정환)
- 발의일자: 2023. 7. 7.
- 회부일자: 2023. 7. 7.
- 상정 및 의결: 제2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3. 7. 19.)

2.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달서구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 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연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 「산업발전법」 제18조, 제19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3. 7. 7. ~ 7. 17.):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전문위원 김병욱)

-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사안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 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 시행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에는 ESG 경영 지원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구축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국내 · 외적으로 ESG 경영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 ESG 경영의 선도적인 역할 이행과 정착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에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지역의 기관 · 기업 등의 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령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질의 ·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수정내용: 불임 수정안과 같음

대구광역시 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 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출자·출연기관”을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생략)2. “산하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u>출자·출연기관</u>3. (생략)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현행과 같음)2. ----- ----- ----- -- <u>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u>3. (현행과 같음)